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15

발의연월일: 2024. 7. 29.

발 의 자: 김주영 · 민병덕 · 복기왕

박지혜 • 박해철 • 오세희

정진욱 • 이기헌 • 박상혁

박희승 • 윤건영 • 윤후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소음영향도 기준에 따라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로 세분하여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지정 후 5년마다 해당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고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가 길어, 실제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음영향도 기준과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고, 소음영향도 기준의 하한을 낮추며 지정의 타 당성 검토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공항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등).

법률 제 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를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소음영향도 조사의주기·방법 및 기준 등"을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의 방법·절차,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 1.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 79 이상
- 2.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 75 이상 79 미만
- 3. 제3종 구역: 소음영향도 55 이상 75 미만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마다 소음영향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소음대책지역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 음대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범위를 변 경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
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 등) ①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	
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	
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u>대통</u>	<u>다음 각</u>
<u>령령으로 정하는 바</u> 에 따라 제	호의 구분
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	
다.	
<u><신 설></u>	<u>1.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 79</u>
	<u>이상</u>
<u><신 설></u>	<u>2.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 75</u>
	이상 79 미만
<u> <신 설></u>	<u>3. 제3종 구역: 소음영향도 55</u>
	<u>이상 75 미만</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
	<u>지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u>
	년마다 소음영향도에 대한 실
	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u> <신 설></u>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 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 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⑤</u> (생 략)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 책지역이 새로 지정되거나 기 존의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변 경 사실,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따는 실태소사 결과 소름내색		
지역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대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		
나 지정범위를 변경하여야 한		
<u>다.</u>		
<u>⑤</u> <u>제2항 및</u>		
제3항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u>⑥</u> 제1항부터 제3항까지		
<u>⑥</u>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u>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u>		
<u>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u> 의 방법·절차, 소음영향도 조		
<u>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u> 의 방법·절차, 소음영향도 조		
<u>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u> 의 방법·절차, 소음영향도 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의 방법·절차, 소음영향도 조 사의 방법 및 기준 등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의 방법·절차, 소음영향도 조 사의 방법 및 기준 등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의 방법·절차, 소음영향도 조 사의 방법 및 기준 등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의 방법·절차, 소음영향도 조 사의 방법 및 기준 등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의 방법·절차, 소음영향도 조 사의 방법 및 기준 등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의 방법·절차, 소음영향도 조 사의 방법 및 기준 등		

제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